

중국의 수출입 통관제도

中國은 이제 單一國家 시장으로는 최대의 購買力을 갖고있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의 消費市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상품의 輸出競爭力을 증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中國의 수출입 통관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中國 貿易環境에서 커다란 걸림돌중의 하나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中國의 통관법규에 대하여 잘 숙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관세청에서 발행한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의 내용중 중국의 수출입 통관제도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1장 수출입관련 각종규제

(수출입이전에 필요한 절차)

1. 수출관련규제

1) 수출쿼터(出口配額)제도

- 수출쿼터대상 : 102개 품목
- 수출쿼터는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쿼터(계획쿼터), 동식물품 수출쿼터(주동적쿼터), 여타 국가와의 협정에 의한 쿼터(피동적쿼터)로 구분
 - 계획쿼터품목 : 쌀, 콩, 옥수수, 설탕, 면화, 생사, 원유, 석탄, 강재, 코크스, 신문지, 시멘트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물품등 40개 품목
 - 주동적쿼터 : 돼지, 소, 가금류(닭, 오리 등), 마늘, 참깨, 꿀 등 38개 품목
 - 피동적쿼터 : 방직품, 버섯통조림, 도자기 등 24개 품목
- 경량마그네슘, 캐시미어등 27개 품목(피동쿼터대상 방직품제외)은 쿼터 유상입찰 실시

- 수출쿼터대상물품은 수출허가대상물품에 속하며, 수출허가 신청시 수출쿼터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배분된 쿼터량에 따라 수출허가증 발급
- 수출쿼터는 당해연도내에만 유효하며, 당해연도 12월 16일 이전까지 배정받은 수출쿼터물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함.

2) 수출허가(出口許可) 제도

- 수출허가대상
 - 흑백TV 및 브라운관등 58종 물품이 수출허가대상
 - 가공무역(進料가공, 來料가공) 제품의 수출시에는 수출허가 면제
-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 외상투자기업 및 보상무역 수출물품과 쌀, 대두, 석탄 등(주로 농수축산물, 광물성연료) 27종 수출물품은 유효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사용가능
 - 기타물품의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6

개월, 최고 12회까지 수출통관시 반복사용 가능

3) 기타수출 규제

- 수출금지품목 : 사항, 천연우황, 동 및 동합금, 백금, 3염화칼륨 등 일부 화학제품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출금지물품
- 수출업체 제한 등
 - 화학무기생산에 사용가능한 화학제품(軍民通用化學品)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허가한 업체만 수출가능
 - 유독성화학품은 무역방식을 불문하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유독성 화학품의 수출은 수입국 정부에서 발급한 합법사용증명서를 수출허가신청시 제출해야 함.
 - 重水는 중국화공진출구공사에서만 수출가능
 - 中定劑와 과염소산암모늄은 중국북방공사에서만 수출가능
 - 일부물품의 수출은 지정된 항구를 통해 수출
 - 경량마그네슘 : 대련, 영구, 청도, 천진, 장춘, 대동, 만주리 등
 - 대일수출 밤 : 청도, 천진, 진황도 등
 - 수출허가 대상인 컴퓨터는 사전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신고하여 기술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허가신청시 기술검사증명 제출

2. 수입관련규제

1) 수입쿼터(進口配額)제도

- 대상물품
 - 대량수입하는 경우 국내산업발전에 중대손실 초래우려 물품, 수입 및 산업구조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 국내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량 조정이 필요한 물품, 외환수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쿼터제도 시행
 - 현재, 15종 147개 세번품목의 기계전기제품과 양모, 조제유류 등 일반물품 13종 97개 세번품목을 수입쿼터대상으로 지정

터대상으로 지정

- 수입쿼터증명 유효기간등
 - 수입쿼터증명을 발급받은 후 수입허가증 신청
 -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허가증 신청. 발급받지 않는 경우 무효.

2) 수입허가제도

- 대상품목
 - 식량·식용유 등 35종 374개 품목은 수입전에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비쿼터관리 수입허가 7종 130개 세번품목, 쿼터관리 수입허가 15종 147개 세번품목, 쿼터관리 기계전기제품 15종 147개 세번품목
 - 수입쿼터대상물품은 모두 수입허가 대상이며, 수입허가신청시 수입쿼터증명 제출
 - 기계전기제품의 부품은 주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주기계의 수입허가증에 의해 통관가능. 다만, 부품의 세트구성가격이 완제품 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별도 수입허가증 필요
 - 수출물품이 재수입된 경우, 동 재수입물품이 수입제한물품인 경우 재수입시 수입허가증 필요
- 수입허가증 유효기간등
 - 유효기간은 1년이나 연장가능
 - 수입허가증상 수입물품의 도착항구는 1개소만 지정. 동일계약에 의한 수입물품이 여러항구로 구분 수입되는 경우 항구별로 수입허가증 취득

3) 기타 수입규제

(1) 수입전담회사 지정

- 국가경제계획 및 국민생활에 관련이고 시장독점성이 강하며 가격이 민감한 소수 대량 원자재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정한 회사가 전담수입
 - * 지정물품 : 밀, 원유 및 조제유류, 담배 및 담배제품, 고무, 鋼材, 목재,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면화, 식용설탕, 植物油

- 다만, 다음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물물교환무역, 進料가공(鋼材제외) 및 來料가공무역용 수입물품
 - 외국투자기업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외국정부의 차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에 따른 수입물품
 - 청부공사와 노무합작에 따른 물자교환 및 기능

(2) 기계전기제품(機電產品) 수입관련 제한

-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및 그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쿼터관리, 특정산품목록관리 및 자동등기제도의 3가지 방법으로 관리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 자동차등 15종 기계전기제품(147개 세번품목)은 국가 機電產品進出口辦公室로부터 수입쿼터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대상물품
 - 자동차 및 부품, 오토바이 및 부품, 칼라TV 및 브라운관, 녹음기 및 부품, 냉장고 및 콤프레샤, 세탁기, 녹화설비 및 부품
 - 카메라 및 부품, 손목시계, 에어컨 및 콤프레샤, 녹음녹화테이프 복제설비, 자동차기중기 및 밀판, 전자현미경, 電流紡絲機, 전자스펙트럼
- 특정산품목록관리
 - 중국내 연구개발 또는 생산기술이 도입됐으나 시작단계로 국내관련업종보호가 필요한 기계전기제품이 대상
 - 선박용 디젤엔진, 전력변압기 등 99종의 기계전기제품이 대상
 - 수입절차
 - 중국기전설비입찰중심에서 입찰에 의해 수입권환을 매입하며,
 - 동 입찰증명을 국가기전산품진출구 관공실에 제출하여 機電產品 수입증명을 받은 후 수입가능
- 자동등기제도
 - 기계전기제품의 수입관리를 위해 수입쿼터관리 및 특정산품 목록관리대상이 아닌 기계전기제품은 수입시

- 등기토록 의무화
 - 다음의 경우는 등기대상에서 제외
 - 외상투자기업(화교포함)이 투자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가공무역용에 직접 필요한 원자재등을 수입하는 경우
 - 무상원조 및 화교가 기증 수입하는 경우

(3) 자동차 수입항구 지정 확대

- 자동차의 수입은 지정된 7개 중국내 수입항구로만 수입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도 포함
- 자동차 지정수입항구
 - 해상: 천진, 대련, 상해, 황포
 - 육상: 심천(황강), 만주리, 阿拉山口
-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함.
 - 자동차부품 수입가능 세관
 - 북경, 대련, 남경, 황포, 湛江, 海口, 남녕, 하문, 무한, 곤명, 중경, 하얼빈, 장춘 만주리, 二連세관
 - 천진신항세관, 심천문금도세관, 청도세관 부두 판사처, 상해포강 세관 및 오송세관, 광주세관 신평 판사처, 복주 馬尾세관
-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
 - '98. 1. 1부터 시행해 오던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정책을 금년부터 일부 물품에 대해 제한완화 조치
 - 관리방법
 - 생산안전, 신변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압력용기류, 전기·의료시설통, 공사용 및 자동차·선박기계류 등 중점 중고기계전기제품과 쿼터 및 특정관리대상인 중고기계제품은 수입제한
 - * 중점 중고기계전기제품: 12류 214개 세번품목
 -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 중고기계전기제품은 ○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외경무부 기계전기제품 수출입사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중고기계전기제품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수입설비명세서와 상품검험기구에서 발급한 舊機電產品進口備案書에 의해 통관 허용

- 來料加工용으로 수입하여 가공생산에 사용한 후 다시 수출하는 중구기계전기제품 및 부품은 수입에 제한을 받지 않음.

(4) 특정상품 자동등기관리

- 중요물품 수입에 대한 거시관리와 일부 대량원자재와 민감성 물품의 수입 상황 파악을 위해 일부 특정수입상품에 대해 등기관리
- 대상물품
 - 식량, 식용유 등 14종 449개 세번품목
 - 가공무역용 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모두 등기관리
- 수입계약이전에 해당지역 계획위원회 등에 등기신청후 등기증명을 발급받아 수입시 세관에 제출
 - 등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

(5) 폐기물 수입규제

- 폐기물의 수입은 “국가제한 수입사용 가능 원료의 폐기물목록”에 계기된 폐기물만 수입이 가능하며, 목록에 계기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입금지
- 수입가능 목록(28종)
 - 뼈폐기물, 제련폐기물, 나무 및 나무제품 폐기물(톱밥 및 스크랩), 코르크 폐기물, 回收종이폐기물(표백, 미표백, 기계제조 등 3종), 면사웨이스트, 기타 면웨이스트
 - 비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鋼鐵, 스텐레스강, 기타 합금강, 주석, 도금강, 밀링 등의 폐기물, 기타), 재용해용 철스크랩, 동매트, 침전동, 동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탄탈륨)
 - 각종 금속 폐조각 및 폐전기기계 등, 해체용 선박, 플라스틱 웨이스트와 스크랩(에틸렌, 염화비닐, 기타), 기타 특별히 수입이 필요한 폐기물
- 수입가능한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환경보호국에 사전 신고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을 선적하기전에 중국 상품검사국이 인가한 수출국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은 반송조치하고 인민폐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6) 수입물품 품질안전검사

-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89년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47개품목에 대해 품질안전검사를 의무화
- 대상품목
 - 자동차, 자동차 안전유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안전벨트,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 타이어, 보일러,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부품, 이동식 및 고정식 콤프레샤
 - 냉장고, 냉장고용 콤프레샤, 에어컨, 에어컨용 콤프레샤, TV, TV브라운관, 음향기기, 비데오레코더, 퍼스널 컴퓨터, 프린터, 가정용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샤워기, 피부 및 머리손질기구, Food Processor, Cooking Range, Roaster
 - 액체가열기류,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Power Switching Equipment, Low Voltage Apparatus, 통신단말기, 안전기술방법제품, 화재경보설비
 - 의료용 X선진단설비, 혈액투석장치, 공심섬유투석기, 혈액정화장치의 처리순환관도, 심전도기, 삼입식 심장박동기, 의료용 초음파 진단 및 치료설비
- 수입전에 국가상품검사국의 견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견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공장등 생산현장조사후 수입상품 품질안전허가증서 발급
 - 수입상품에 안전표지 구입 부착
 -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생산현장 및 제품에 대한 발취검사 실시, 불합격한 경우 허가 취소

(7) 수입전자제품 電磁 검측 실시

- 유해 전자파가 환경 및 주민생명, 재산에 끼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99. 1. 1부터 컴퓨터, 모니터, 전원스위치, 프린터, TV, 음향설비 등 6종의 수입품에 대해 電磁 검측 실시
- 2000. 1. 1부터는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발행한 수입상품 품질안전허가증서에 전자검측안전인증을 첨부해야만 수입과 판매가 가능

(8) 최초수입 화학품 및 유독화학품 수입관리

- 인체건강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유독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초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서는 등기하게 하여 유해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
- 유독화학품 수입관리
 - 유독화학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금지 또는 엄격제한 유독화학품목록에 계기된 유독화학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환경보호국에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신청을 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유독화학품목록에 계기된 유독화학품은 공업용화학품 6종, 농약 21종으로 총 27종임.
- 최초수입 화학품 관리
 - 중국에 최초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이전에 국가환경보호국에 최초수입환경관리등기신청을 해야하며 성분확인을 위한 시험샘플을 제출해야 함.
 - 다만, 실험용으로 수입하고 수입량이 50kg미만인 화학품은 등기관리를 면제
 - 서류심사 및 샘플 분석시험결과 규정에 적합한 경우 등기를 허가하고 등기증을 발급하며, 동 등기증에 의해 수입이 가능
 - 동일품목이 다른 업체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도 등기해야 함.

3. 기타 수출입관련 규제

1) 수출입상품검사(進出口產品檢驗)

-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와는 별도로 국가상품검험국이 실시하는 상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상품검사대상 물품은 품질문제가 비교적 많은 물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상품검사대상 상품은 수출입통관전에 상품검사기구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현재 총 18종 2,012개 수출입품목에 대해 상품검사를 실시
 - 수입상품검사대상 816개, 수출상품검사대상 1,577개 품목

2) 동식물 검역 및 식품위생 검사

- 동식물 검역
 - 수출입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대상물품을 담은 용기, 포장물 및 동식물감염지역에서 수입하는 운수수단은 수출입통관전 공항만의 동식물 검역기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역대상 수출입 물품
 - 동물 : 사육 또는 야생의 산 동물 (예 : 가축, 가금, 짐승, 뱀, 자라, 새우, 게, 조개, 벌, 물고기, 누에 등)
 - 동물제품 :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가공은 했으나 병균의 전파가 가능한 동물의 제품(예 : 생가죽, 모류, 육류, 내장, 유지, 卵류, 혈액, 잉태물, 정액, 뼈, 발굽, 뿔 등)
 - 식물 : 재배식물, 야생식물 및 그 종자, 묘목 및 번식재료 등
 - 식물제품 : 미가공 혹은 가공은 했으나 병충해를 전파할 수 있는 식물의 제품(예 : 곡식, 콩류, 면화, 유류, 마류, 연초, 종자, 건과, 야채, 목재, 신선과, 생약재, 사료 등)
 - 기타 검역물 : 동물박신, 혈청, 진단액, 동식물폐기물 등
- 식품위생검사
 - 수입하는 모든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자재와 식품용공구 및

설비는 국경식품위생감독관리기구에
서 위생감독과 검사를 실시

- 수출식품은 국가수출상품검사부서(國家商品出口檢驗部門)에서 위생감독, 검사 실시

3) 약품검사

- 수입약품은 위생부로부터 수입약품등록증(進口藥品注冊証)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시 공항만의 약품검사소의 검사결과 합격한 후에만 수입가능
 - 약품수입업체는 위생행정부서에서 심사발급한 약품경영기업 허가증이 있어야 함.
- 수출한약재는 동식물검역방법과 멸종위기동식물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 기타 특수약품의 수출입관리방법
 - 혈액제품: 사람혈청알부민외의 혈액제품수입 금지. 임상치료를 위해 혈액제품의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방 위생청(국)의 허가를 받아 수입시 허가서류를 제출하여 약품검사소에 신고하고 검사에 협력해야 함.
 - 정신의약품: 정신의약품의 수출입은 위생부의 심사를 거쳐 수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중국의약보건의약품수출입공사가 책임관리. 정신의약품의 품종과 분류는 매년 위생부에서 공포
 - 마취약품: 위생부의 심사후 마취약품수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마취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정부와 국제마취품관제국에 통지

4) 문화재 수출감정

- 문화재의 수출 또는 개인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문화행정관리부서의 감정을 받아 문화재 수출특허증(文物出口特准証) 또는 문화재수출증명(文物出口証明)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이 중국에서 문화재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판매상점의 외화구입인장이 날인된 특허수출문화재 등록말소영수증(特許出

口文物核銷登發票)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5) 금은 및 그 제품의 관리

- 황금수입은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휴대하는 황금제품은 자가사용의 합리적인 수량에만 수입 허용
- 금은 혹은 금은제품이나 금은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허가과 검사를 받고 등기한 후 금은제품 수출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6) 진귀, 희귀야생동물

- 진귀, 희귀야생동물과 그 제품 및 야생동물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멸종위기동식물 수출입관리사무실(瀕危物種進出口管理辦公室)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허가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임업부에서 제정한 “야생동물약재성분이 함유된 부분 한약명단”에 열거된 한약을 수출하는 경우, 省級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쳐 국무원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멸종위기 수출입관리사무실에서 수출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제2장 수출입관세

1. 수입관세

1) 수입관세율의 적용

- 수입화물의 수입신고일에 시행중인 수입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
 - 수입화물도착전 사전수입신고한 화물은 동 화물을 선적한 선박·항공기 등의 입항신고일에 시행중인 수입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징수
-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과 우혜세율로 구분되며,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된 대부분의 국가(우리나라 포함)는 우혜세

율을 적용하고, 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화물은 보통세율을 적용

- 쿼터한도내 수입물품, 일부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 관세율
 - 밀, 보리, 옥수수, 쌀, 콩, 식물성유, 양모 등 13종의 수입쿼터관리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쿼터한도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 잠정수입관세율
 - 일부 생산설비 및 생산성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374종의 부분생산설비와 192종의 생산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우혜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
- 종량관세 및 복합관세
 - 맥주, 원유, 사진필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따른 종량관세 부과
 - 영상기록기기 및 재생기기, TV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는 대당 수입가격에 따라 증가세 또는 증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관세 부과

2) 중국의 관세율 현황

- 평균관세율
 - '92년 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 '99년 1월 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은 16.78%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세율(15% 내외)에 근접한 수준
 - ※ '92년 평균관세율 43.2% ⇒ '99년 1월 이후 16.78%
 -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 인하계획을 발표 및 WTO 가입노력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가 계속될 전망
 - 2000년 15%, 2005년 10% 및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 인하 전망
- 관세율 구조
 - 최고 관세율은 100%, 30%이상 고관세율적용품목은 전체의 45% 수준
 -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비

교적 낮은 반면,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

- ※ 예(기계전자제품) : 원자재 8.94% ⇒ 부품 10.76% ⇒ 완제품 14.92%
- 광산품등 자원관련물품 및 기계전자부품등 제품생산소요 원자재는 평균관세율 이하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경공업제품, 농산품과 방직제품은 평균관세율 이상의 높은 관세율 부과
- ※ 예 : 광산품 6.94%, 화공원료 및 제품 11.45%, 목재 및 종이제품 12.88%, 기계전자부품 및 제품 14.59%, 경공업제품 17.9%, 농산품 20.43%, 방직품 27.2%
-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율 현황

아국 주요수출품목 관세율

- 대중국 30대 주요수출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4.79%로 중국의 전체 평균관세율 17%보다 낮은 수준
- 수출중 상당부분을 점하는 합성섬유제품, 편직물 및 신발부품의 경우 20~36%의 높은 관세율 부과
- 대중국 주요수출품목은 유류등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철강제품, 종이제품, 브라운관, 컴퓨터부품, 가죽 및 신발부품 등

주요 관심품목 관세율

- 자동차의 경우, 중국관세율표상 최고 관세율 수준인 50~100%의 높은 관세율 부과, 오토바이는 60%의 높은 관세 부과
- ※ 자동차등 관세율
 - 1500~2000cc 승용차 : 관세 80% + 소비세 5% + 부가가치세 17%
 - 5~20톤 화물차 : 관세 50% + 부가가치세 17%
 - 오토바이 : 관세 60% + 소비세 10% + 부가가치세 17%
- 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 브라운관, FAX기 및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에 30~60%의 높은 관세율 적용
- ※ 전자제품 관세율
 - VCD 40%, VTR 60%, TV 35~45%, 마아크로웨이브오븐 35%, 비디오카메라 60%, 에어컨 25~40%, 냉장고 30%, 세탁기 35%,

카메라 25%

- 컴퓨터 9~15%, 브라운관 14%, FAX기 12%, 반도체 10%, 전자직 접회로 6~10%
- 의류의 경우, 21~33%의 관세부과
- 기타 대중국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관세율
- 오디오 및 비데오테이프 30~35%, 사진필름 60%, 손목시계 22~25%, 피아노 30%, 타이어 30%, 자전거 25%
- 플라스틱제품 16~20%, 화장품 35%, 삼푸 25%, 치약 25%, 비누 30%, 담배 65%, 가구 22%, 점 및 과자류 15%

3) 수입원산지 결정

- 보통세율 및 우혜세율의 정확한 적용과 수입화물 원산지의 확정을 위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동 수입원산지는 다음방법으로 확정
- 완전히 한 국가내에서 생산, 제조된 수입화물은 그 생산국 또는 제조국이 원산지가 되며, 다음의 4가지를 포함
 - 해당국 영토(영해)내에서 채취한 광산물, 해당국 영토에서 수확하고 채취한 식물산물, 수렵이나 포획하여 획득한 제품, 그 나라에서 출생하였거나 양육한 산동물 및 그에서 얻은 제품
 - 해당국 선박에서 하역한 해양포획물 및 해상에서 획득한 기타산물, 해당 가공선박이 전술한 상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 해당국에서 수집하고 재가공제조에만 사용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 해당국에서 완전히 위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완제품
- 여러국가를 경유하여 가공 또는 제조된 수입화물은 동 화물에 대해 최후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공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 기계, 기기, 기자재 또는 차량부품, 조립부분품, 예비품 및 공구는 주기계와 동시에 수입하고 수량이 합리적이면

주제품의 원산지에 따름. 분할수입할 경우 각자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확정.

4)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1) 과세가격 결정 방법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가격
-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구체적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거래가격중 다음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화물이 중국내 수입지점까지 운송되어 하역되기전까지의 포장비, 운임 및 기타 노무경비
 -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 수입자가 국내에서 동 화물을 생산, 제조, 출판, 발행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국외로 지불한 기술료, 특허수수료, 상표비, 저작권비 및 전유기술,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자료비 등 기술료 (※기술료는 계약상 수입화물가격과 별도 계산된 전문비용 등을 의미)
 - 아래비용은 단독으로 가격계산이 가능하고 이미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에 포함되었을 경우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
 - 수입자가 해외의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구매 수수료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하는 정상적인 커미션
 - 공업시설, 기계설비류 화물을 수입한 후 기초건설, 장치, 조립, 시운전 또는 기술지도에 소요된 비용
 - 수입화물의 실제 거래가격을 위의 방법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가격을 확정
 -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구입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동일화물"이란 물리, 화학성질, 품질과 신용 등 모든 방면에서 동일한 화물을 의미하며, 다만 외관상의 경미한 차이와 포장의 차이는 허용

- 동 화물과 동일한 수출국에서 수입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유사화물”이란 유사한 원리나 구조, 유사한 특성이나 구성재료가 있고 동등한 사용가치가 있으며, 성능상이나 상업상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화물
- 동 수입화물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국제시장에서 공개된 거래가격
- 수입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시 발생하는 기타세 및 수입후의 정상운수 및 저장에 소요되는 경비, 영업비등 각종비용 및 이운을 공제한 후의 가격, “수입후의 각종비용 및 이운”의 종합계산은 과세가격의 20%로 정함.
- 과세가격 확정이 어려운 수입화물은 보증금 납부후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심사하여 과세가격을 확정
 - 보증금 납부후 사후 가격심사가 가능한 범위
 - 수입신고가격이 같은 기간중 수입한 동일, 유사화물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합법적인 증거나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세관의 평가 가격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매매쌍방이 특수경제관계가 있고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협의가 있을 때
 - 처음 수입하는 신제품으로서 신고가격이 낮다고 인정되고 그 가격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
 - 기타 보증금을 받고 가격을 사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수입화물
 - 보증금 납부후 사후가격 심사방법
 - 잠정결정 과세가격에 의해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에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통관허용하고 거래가격을 사후 심사
 - 관련 수출입회사 및 관련업체의 의견 청취, 수화인이나 대리인에게 가격 증명서류를 요구, 매매쌍방의 관련계약, 영수증, 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의 심사, 대외 외환결재, 국내판매 등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과세가격 결정
 - 사후과세가격심사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외에는 3개월내에 종료. 과세가격이 결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중 징수대상 관세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 추징

(2) 수입화물과세가격중 운임, 보험료 계산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인 CIF가격중에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 해상수입화물은 동 화물이 중국내 하역항구에 도착될 때까지 계산하며, 하역항구가 内河(江)항구일 때는 内河(江)항구까지 계산
 - 육상수입화물은 국경의 제1도착지점까지 계산하며, 운임, 보험료, 잡비가 내륙지 도착지점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도착지점까지 계산
 - 항공수입화물은 국내 최초도착공항까지 계산하며, 거래가격이 최초 도착공항이 아닌 내륙지공항까지 계산된 경우 내륙지공항까지 계산
- 수입화물이 FOB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국 항구에서 중국내 항구까지 실제 지불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 실제지불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운임률과 보험률(액)에 따라 계산
 - 운임은, 규정된 운임률(액)에 따라 계산하며, 항공운임의 경우 동 운임에 화물가격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15%로 계산 가능
 - 보험료는, 규정된 보험률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FOB가격 + 운임”의 3/1,000을 보험료로 계산
- 수입화물이 C&F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항구로부터 중국내 항구까지 운송전에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를 가산. 실제 지불한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보험비율인 C&F 가격의 0.3%를 보험료로 계산
- 개인이 휴대 수입한 화물은 별도로 운임과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5) 수입관세의 계산과 징수

-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는 적용관세율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관세를 계산 징수
수입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 관세의 계산징수시 적용환율 및 계산방법
 - 외화로 거래되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날에 국가외환관리부서에서 공포한 《인민폐외화환율표》의 매매중간가격에 근거하여 인민폐로 환산. 《인민폐외화환율표》에 열거되지 않은 외화는 국가외화관리부서에서 확정한 외환율에 근거하며 인민폐로 환산
 - 과세가격은 원까지 계산하며 원이하는 4사5입. 관세액이 인민폐 10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함.

2. 수출관세 및 수출가격 심사

1) 수출관세의 징수대상

- 중국은 원자재의 무분별한 수출 방지 및 가공제품의 수출 장려를 위해 1982년부터 농산물·광산물 등 일부 자원성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
- 실뱀장어, 산양피, 연광, 아연광, 주석광, 비합금철, 인, 일부 알루미늄 및 동 제품 등 36개 세번품목의 수출에 대해 20~40%의 수출관세 부과
 - '97년 10월부터 연광, 아연광 및 주석광에 대해서는 각각 5, 10, 20%로 인하된 잠정수출관세 부과
 - 알루미늄의 봉, 선 및 판과 아연피에 대해서는 영세율 잠정 적용

2) 수출관세의 계산방법

- 수출관세는 수출신고일에 시행중인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
-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출FOB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 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실제거래가격"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말하며, 과세

가격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거래가격중 외국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되고 화물의 FOB가격과 별도 열거된 경우 공제가가능하나, 별도 열거되지 않은 경우 공제불가
- 구매자측이 화물의 포장비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
- 수출물품 과세가격중 운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 수출화물이 국경을 출발하는 최종항구에서의 FOB가격을 실제 FOB가격으로 하며, 동 화물이 내륙에서부터 운송되는 경우 국내운임은 공제
- 수출화물이 C&F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내항구를 출발한 후의 운임을 공제
- 수출화물이 CIF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국내항구를 출발한 후의 운임과 보험료를 공제

3) 수출가격 심사

- 수출의 정상질서 유지와 저가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은 수출상품에 대한 가격심사를 실시
- 수출가격 중점심사대상수출물품을 지정하고, 중점가격심사대상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차례로 아래가격에 따라 심사
 - 중국의 각 수출입상회가 협조가격으로 정한 수출상품의 가격
 - 수출허가증발급부서가 수출허가증상 확정한 가격
 - 기타 중점상품의 가격
- 세관에 수출신고된 수출상품가격이 심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세관에서 관련 수출입상회와 국가외환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처벌
 - 가격이 현저히 낮고 외화불법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화물을 압류하여 수출을 불허하고 수출물품가격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3. 관세의 납부, 환급(퇴세) 및 추징(보세)

1) 관세의 납부

- 수출입화물의 관세는 지정기일내에

- 납부해야 하며, 지정기일을 경과한 경우 체납금 가산 징수
- 납부기한 및 체납금
 - 세관이 납세증을 발급한 익일로부터 7일 이내(일요일과 법정휴일은 제외)에 지정은행에 납부
 - 기일을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간만료익일부터 납세일까지 매일 0.1%의 체납금을 가산징수

2) 관세의 환급(退稅)

-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초과납부한 관세액의 환급가능
 - 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납세일로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 원래의 납세영수증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退稅)신청 가능
 - 감면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관세등을 납부한 경우 납세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관에 감면세증명과 납세증을 제출하여 환급신청해야 함.
- 관세환급이 가능한 경우
 - 세관의 착오로 초과납부한 경우
 - 세관이 검사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부족하여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 수출관세를 완납한 화물이 선적 수출되지 못했을 때 수출취하(退關)신고하여 세관이 허가한 경우
 - 감면 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반송된 수출화물로서 최초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래의 수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출관세는 환급하지 아니함. 다만, 수입관세는 징수하지 아니함.
 - 반송수출되는 수입화물로서 당초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신고하고 당초의 수입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는 환급하지 아니함. 다만, 수출관세는 징수하지 아니함.

3) 관세의 추징(補稅)

-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부족징수

-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관은 납세일 혹은 화물통관일로부터 1년내에 수화인과 발화인 혹은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징수 가능
- 수화인과 발화인 혹은 대리인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년내 추징 가능
- 관세의 추징방법
 - 감면수입화물을 세관의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판매함으로써 인해 추징해야 할 경우, 당초 수입일에 실시한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추징
 - 來料加工, 進料加工 등으로 수입한 부품, 원자재 등 보세수입화물을 허가받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내수판매(수입)신고를 하는 당일의 관세율 및 환율에 따라 추징.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한 경우, 세관에서 적발한 날의 관세율 및 환율에 따라 세금을 추징.(조사결과 최초수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수입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징수)
 - 임대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수입일에 실시한 세율에 따라 분할 징수. 다만, 환율은 납부시 환율로 계산
 - 과다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 당초 수입일의 세율 및 환율에 따라 추징
 - 세척분류의 변경, 과세가격의 심사 확정 및 기타 업무착오로 인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관세징수일의 관세율과 환율에 의해 추징
 - 사후 관세납부를 허가한 수입화물에 대해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 또는 1회 전액납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해화물의 당초 수입일의 관세율과 환율에 의해 징수
 - 밀수수입화물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적발된 날의 세율에 의해 추징. 환율은 세관의 납세통지서 발급일자의 환율을 적용
 - 임시수입화물이 정식수입화물로 전환되어 추징해야 하는 경우, 정식수입으로 전환된 날의 세율에 의해 추징. 환율은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당초 수입일의 환율로 계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납세통보서 발급일의 환율로 계산

4. 관세의 감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는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중국은 법정감면, 특정감면, 임시감면의 3가지로 구분하여 관세감면을 허용

1) 법정감면

- 법정감면은 해관법, 관세조례와 수출입세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을 의미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
- 법정면세대상
 - 세액이 인민폐 10원이하인 물품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화물샘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자
 - 수출입운수공구의 하역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물자 및 음식용품
-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하는 물품
 - 해외에서 운수도중 혹은 하역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손실된 것
 - 하역후 세관통관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파괴 또는 손실된 것
 - 세관검사시 이미 파손, 부패된 것으로서 보관부주의로 조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특정감면

- 특정감면은 법정감면외에 국무원에서 정한 감면방법에 의해 특정지구, 특정기업 및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행하는 감면제도를 의미
- 특정감면 대상물품은 화물의 수출입 전에 세관에 관련허가서류나 증명 및 증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고 세관감면세증명서를 발급

(1) 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수입설비

- '98. 1. 1부터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국내공급 부족물품등의 생산증대를 기하기 위해 국가중점발전장려산업에 속하는 지정 수입기술, 기계설비 및 기기에 대해 감면특혜 부여
- 면세가능업종(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비교적 발전전망이 큰 것
 - 비교적 높은 기술로 설비갱신 및 기술개조를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효율 제고가 가능한 것
 - 국내에서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화 잠재력이 있어 연구개발시 국내사업의 기술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것
 - 자원절약, 생태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것
 - 국내의 공급능력증대에 유리한 것
- 관세면제대상 품목
 -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가공무역업의 경우 외국의 수입자가 제공한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 면세불허대상 품목
 - 외국투자기업 : TV, 비디오, 비디오 카메라,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음향설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 화교환기, 퍼스널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관세율표 1~83장, 91~97장 세번물품
 - 국내기업 : 전력설비등 총 27종 물품과 관세율표 1~83장, 91~97장 세번물품
- 면세수속절차
 - 사업타당성 연구심사기구(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소지하여 소재지세관에서 면세수속을 해야 한다.

(2) **외상투자기업 수입설비기자재 감면**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에서 설명

(3) **과학교육용품의 수입**

- 과학연구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이 직접 과학연구 및 학습용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화물로서 세관이 규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등을 면제
- 해당기관
 - 대학교
 - 국가교육위원회와 省級교육주관부서에서 학력을 승인한 대학교
 - 국무원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력을 승인한 직공대학
 - 省, 市, 자치구의 TV대학(TV대학 분교를 포함)
 - 전문대학 학력이 있는 市, 지구급이상의 당교(党校)
 - 과학연구기관
 - 경제상 독립채산이고 국무원 각부위와 省級과학연구전문중사기관
 - 공장, 병원, 대학교 소속의 경제상 독립채산인 전문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기관
 - 省級이상의 과학연구항목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급이며 경제상 독립채산인 과학연구기관
- 과학교육용품 면세범위
 - 과학연구, 교학용의 분석, 테스트, 검사, 계량, 관측, 신호발생기기(의료기기 포함), 측정용시계 및 그 조립품과 부속제품
 - 과학연구, 학습용 컴퓨터
 - 화학용 시약, 시험용 동물, 표본, 모형
 - 학술전용의 폐쇄회로 TV 및 그 부품
 - 학술전용 영화필름, 환등필름, 원음 녹음테이프
 - 서적, 간행물, 도표, 강의원고, 강좌원고 및 과학기술교류자료
 - 중·소학교(중등전문학교, 중등기술학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대상 수입기관에 속하지 않지만, 국가가 중·소학교의 컴퓨터교육보급을

지지하기 위해 교육전용으로 수입하는 개인용컴퓨터셋트 및 부품

- 화물의 수입통관
 - 면세가능 과학교육용품의 수입통관시 과학교육용품면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입화물징면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면세통관한 과학교육용품은 판매·양도 또는 타용도로 이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판매·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고 면세반은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함.

(4) **장애자 수입물품**

- 장애자의 건강증진등을 위해 장애자조직과 장애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음 수출입물품에 대해 면세특혜를 부여
 - 장애자조직이 직접 장애자조직과 장애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전용물품
 - 장애자의 취직을 위해 전문설립한 생산기업이 수입하는 기계설비
 - 장애자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관세 면제
- 장애자기업조직이 면세대상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민정부, 중국장애자복지기금회 또는 지방 민정청(국)의 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신청을 해야 함.

3) **임시감면**

- 임시감면은 법정감면과 특정감면대상 물품이외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특별한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감면세를 허용하는 감면제도
- 임시감면세는 반드시 특수정황하에서만 허용되며, 특수정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정책과 경제체제의 변화등 정책상의 원인으로 운영상의 적자 혹은 세금부담이 과중한 경우
 - 재난구호용 물품을 수입할 때
 - 세율이 매우 불합리하나 일시 조절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과중해 진 경우
 - 특수정황으로 국가의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임시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입전에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 및 증명을 첨부하여 소재지세관에 신청을 해야 함.

4) 감면제외물품

- '95. 1. 1부터 다음의 20개 물품에 대해서는 무역방식 및 수입자를 불문하고 감면을 불허
 - TV, 촬영기, 녹화기, 영사기, 음향설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널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및 문자처리기, 가구, 등구, 음식재료
 - 다만, 국제조직(민간조직은 불포함)이나 외국정부에서 무상으로 기증했거나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공약 및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속하는 경우 감면 가능
- 원래 외상투자기업과 상주기구 및 각종 개방지구내 기관, 기업, 사업단위 등이 면세로 수입할 수 있었던 사무용품도 1995년 1월 1일부터 감면 불허

5. 관세관련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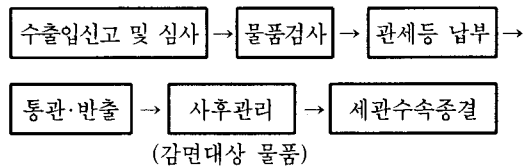
- 납세의무자가 세관에서 확정된 관세 등 징수 및 감면, 관세추징 및 환급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먼저 세관이 부과한 세액에 따라 납세한 후 세관에서 납세증을 발급한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세관에 재심 신청
- 세관은 재심신청서 접수일 15일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재심결정서를 납세인에게 송부하여 재심결정내용을 통보
- 납세의무자가 재심에 대해 계속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해관총서에 재심신고를 해야하며, 해관총서는 재심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최초 납세세관에 결정서를 통보하여 신청인에게 송달
- 납세의무자가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에 계속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다 소송 제기 가능

- 최초 세관의 징수결정과 동일한 재심결정을 한 경우, 해당세관 소재지 인민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해당세관에서 응소
- 최초 세관의 징수결정과 상이한 재심결정을 한 경우, 해관총서 소재지 인민법원에 제소해야 하며, 해관총서에서 응소

제3장 수출입 통관절차

1. 수출입신고



1) 수출입신고자

-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가능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업무 경영권이 있는 기업으로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며, 신고대리인 또한 세관에 등록된 대리신고업체의 소속원이어야 함.

2) 수출입신고기한

- 수출화물은 화물의 선박적재전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화물은 선박·항공기 등의 입항신고일(우편수입물품인 경우 수취인이 우체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수입신고
 - 수입화물중 입항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轉關運輸)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도착지세관에 수입신고
- 14일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화물 도착가격

의 5/1,000를 수입신고지체금(滯報金)으로 징수

- 보세운송화물의 경우 선박등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입(보세운송)신고하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지체금을 징수하며, 양쪽의 수입신고기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지체금을 각각 징수
- 세관의 수입신고지체금 납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먼저 수입신고지체금을 납부해야 함.
-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반출한 수입화물의 경우 담보기한내에는 수입신고지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운수도구 입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세관에서 당해화물을 매각처리

3) 수출입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내용의 수정

- 수출입신고시에는 수출입신고서(進出口報關單)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출입화물 허가증 또는 각종 증명
- 도착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운송장(Airway Bill)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다만, 산물·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은 제외
- 감면세 대상화물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장, 거래서신 등 첨부
- 수출입신고내용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한 연계서(聯系單) 2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 다만, 수량·중량·가격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신고
- 수출입신고를 취하해야할 사정이 발

생한 경우 수출입신고 취하수속(退關手續)을 해야하며, 취하수속시에는 세관에서 면허한 수출입신고서를 반납

2. 수출입 담보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출입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긴급히 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여 우선 통관한 후 사후에 필요서류등을 보완 가능
- 담보제공후 선통관이 가능한 경우
- 수출입허가증 또는 필요 증명을 취득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본 또는 허가증의 번호만 제출하는 경우
- 수출입신고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장 또는 포장명세서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감면대상화물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하여 선통관하고 사후에 납세수속을 하는 경우
- 관세감면심사중 세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 세관의 조사를 거친 후에야 감면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감면수속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한 경우
- 수출입신고시 세칙분류, 가격심사 등의 원인으로 세관과 수출입자간에 이견이 있고 수출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 세관이 허가한 경우
- 기타 일시수출입화물, 세관 감시관리지역외에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해관총서에서 허가한 경우 등
-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필요한 수출입허가, 증명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자금신용이 나쁘거나 보증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업체
- 세관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밀수혐의가 있는 경우
- 담보방식
- 담보의 제공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보증서식은 세관이 정한 보증서식을 사용

- 보증금 : 보증금액은 수입세와 관련비용의 합계와 상당한 금액
- 보증서류 : 담보인은 반드시 중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규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날인한 후 제출
- 담보의 말소 및 처리
 - 수출입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관은 납부받은 보증금을 담보인에게 교부 또는 보증서류를 취소
 - 담보기한내에 필요한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
 - 보증금을 세금으로 저당하여 담보인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출입수속을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등을 부과
 - 담보인에 대해 필요세금 납부강제 또는 은행에 통지하여 관련계좌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

제4장 특수물품 수출입통관 절차

1. 보세운송(전관운수)화물

- 보세운송 조건
 -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세관의 허가를 거쳐 보세운송 가능
 - 도착지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보세운송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등 운수도구와 장비는 밀폐가 가능하고 봉인 가능할 것(거대, 중량화물로서 컨테이너 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은 제외)
 - 세관에서 허가한 보세운송업체가 운송
 - 상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보세운송 가능
- 보세운송이 불가능한 물품
 - 다음 수입물품은 입항지 세관에서 통관해야 하며, 보세운송 불가능
 -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턴테이블, 녹음기, 라디오 등 방송수신용기기 및 그 부품, 카세트 플레이어

- 전자계산기 및 그 외부설비, 칼라TV 및 브라운관,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등 녹화설비 및 그 부품, 냉장고 및 콤프레샤, 에어컨 및 공기압축기
- 보세운송 물품에 대한 관리
 -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 포장, 샘플채취, 교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할 수 없으며, 세관 봉인·표지 등의 제거 또는 파손 불가
 - 필요시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보세운송화물을 호송할 수 있으며, 보세운송 신청인은 필요한 비용 납부 및 편의 제공
 - 보세운송물품의 국내운송, 보관중 손상, 분실, 도난된 경우 즉시 세관에 보고, 손상, 분실, 도난된 보세운송물품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자, 신청인, 보관책임자에게 책임

2. 일시 수입화물(잠시진구화물)

- 일시수입화물의 범위
 - 국제조직, 외국정부, 외국기업, 사회단체 및 개인이 경제, 기술 과학 또는 문화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중국내로 일시 반입하는 다음 화물
 - 중국내에서 영화, 비디오테이프, 그림, 환등영화 등을 촬영하거나 국내업체등과의 합작촬영을 위해 일시반입하는 촬영기자재, 필름, 녹화테이프, 차량, 복장도구 등
 - 중국내에서의 체육경기, 문예연출을 위해 일시반입하는 기자재, 도구, 복장, 차량, 동물 등
 - 중국내에서의 공정(工程)시공, 학술교류, 강좌 등을 위해 일시 반입하는 각종 설비, 기기, 공구, 교학용품, 차량 등
- 일시 수입화물의 통관
 - 일시 수입화물의 통관시 관세등 상당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 수입허가증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통관 허용

- 일시수입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서류를 수출지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출지세관이 날인 교부한 수출신고서를 당초 수입지세관에 제출하여 등록말소(核銷)해야 함.
- 기타 세관관리
 - 수입통관한 일시수입화물은 당초 일시수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세관의 허가없이 판매·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일시수입화물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재수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만료전에 수입지세관에 기간연장 신청 가능
 -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되지 않은 일시수입화물은 정식 수입통관수속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일시수입한 시공기계, 공정용차량, 기기 및 공구, TV등 또는 촬영기자재등을 6개월을 경과하여 중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수입일의 7개월째부터 매월 관세등을 다음 계산방식에 의해 납부해야 함.

$$\text{세금액} = \text{일시수입화물의 CIF가격} \times \text{수입관세율} \times 1/48$$

3. 수출입 샘플(화양), 광고물품

- 수출입샘플 및 광고물품의 범위
 - 수출입물품의 주문을 위한 물품 샘플
 - 수출입물품의 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물품
- 관세징수 및 면세범위
 - 수출입샘플 및 광고물품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수량이고 다음 사항중 하나에 부합될 때 면세
 - 상품가치가 없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불가능할 때
 - 분석, 실험용으로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완전소모될 때
 - 샘플수입가공(來樣加工)방식 또는 샘플수출가공(去樣加工)방식일 때
 - 매회 총수입금액이 인민폐 400원이 하의 가치일 때
 - 다음의 경우 세금을 징수
 - 총수입금액이 인민폐 400원을 초과하고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
· 각종 차량, 자전거, 손목시계, TV, 녹음기, 라디오, 가라오케기계, 카메라, 가정용냉장고, 가정용재봉틀, 세탁기, 복사기, 에어컨, 선풍기, 집진기, 전축, 비디오키트, 촬영기, 확대기, 방영기, 컴퓨터, 계산기, 전자현미경, 전자분색기기 및 동 물품들의 주요부품은 가치의 대·소를 불문하고 세금을 징수

- 수출입샘플, 광고선전물품의 통관
 - 수입허가대상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
 - 수출허가대상인 경우 인민폐 5,000원을 초과하는 샘플등은 수출허가증 제출
 - 매회 수출하는 샘플은 인민폐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 무대가배상수입화물(무대가저배상진구화물)

- 무대가배상수입화물의 범위
 - 수입화물의 세관통관 후 화물의 손상, 수량부족 또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수출자가 무상으로 동종화물로 교환하거나 수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입되는 화물
- 관세징수 및 면세
 - 최초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며,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세통관을 허용
 - 최초 수입화물을 이미 국외로 반송하였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세관에서 임의처리하도록 한 경우
 - 관련서류상 기재된 전체 수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후 수량부족을 발견하여 보충수입하는 경우
 - 기계, 기기 및 그 부품의 손상 및 품질불량으로 해외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인하에 동의하고, 품명과 규격이 동일한 물품을 보상으로 수입하고 그 가액이 인하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차량,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기타 내구성 소비물품 또는 그 부품의 손상

또는 품질불량인 경우, 당해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

· 다만, 국내 잔류 당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상품검사부서에서 발급한 손상등 증명서에 의해 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등을 계산하며, 초과징수한 관세등은 환급

○ 무대가매상수입화물의 통관

- 손실, 품질불량 등을 배상하기 위해 무대가로 수입하는 화물의 수입신고는 반드시 규정된 배상기간(최고 3년)내에 신고해야 함.
- 무대가매상수입화물의 세관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류외에 상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손상 또는 품질불량증명서 및 수출입자간 체결한 배상협약서 등 기타 관련증명을 제출해야 함.
- 수입허가대상 화물인 경우 당초 수입화물이 해외로 반송되지 않은 경우 수입허가증등 관련서류 제출

5. 수출입 수리화물

- 수출입 수리화물이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화물을 의미, 수출입시 수출입신고서류외에 수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은 제출서류 심사후 일시 면세통관을 허용하며, 수출수리화물의 재수입시에는 다음에 따라 면세수입통관 여부를 결정
 - 보증수리기간내에 무상수리하는 경우 면세수입통관 허용
 - 보증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수리비용과 수리에 사용된 원자재 가격을 합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징수

6. 임대차무역(조화무역)

- 임대차무역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측이 물품을 임차측에 임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무역을 의미
- 임차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정상 임대차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

- 임차료를 일시 전액지불하는 경우, 당해화물의 임대차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징수가능
- 임차료를 분할지불하는 경우, 분할납부시에 관세등을 징수하며, 임차인이 세금의 일시 전액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에 전액납부 가능
-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설비등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대금을 추가지불하는 경우 추가지불한 구입대금에 대해 관세등을 부과
- 임차기간 만료후 재반출되는 경우, 임차수입시 징수 세금은 반환 불가
 - 임차설비를 위탁가공조립(來料加工裝配)용등으로 수입하여 가공비로 대신하거나 임차설비로 생산된 제품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來料加工의 규정에 의해 면세처리
 - 수입임차설비를 노후기업의 기술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개조감면세 특혜방법에 따라 처리

7. 수출입 전시물품(진출구전남품)

- 수출입 전시물품이란 해외 또는 중국내 개최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출입하는 전시물품 및 전시회와 관련있는 광고선전물품, 초대품, 장식품, 전시장 판매물품 및 기타 전시회 사용물품을 의미
- 수입전시물품의 통관
 - 중국내 개최 전시회 물품 수입통관의 경우, 전시회 주최자는 관련부서의 전시회 허가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시회물품은 주최자 또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일괄 세관에 통관수속해야 함.
 - 전시물품의 수입전에 전시장 관할세관에 전시물품목록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시물품의 수입시에는 전시장 관할 세관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운송장, 적재물품목록 등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한 후 전시장소로 운송
 - 전시물품이 전시장소에 도착된 경우

- 물품개장전에 관할세관에 통지해야 하며 세관에서 물품검사 실시
- 전시회에 사용되는 광고선전품과 기술자료 등은 사전에 전시회 관할지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 가능
- 전시, 증정, 판매 등
 - 전시물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전시장 밖으로 반출 불가
 - 전시회 초대용으로 반입한 술, 담배 및 식품은 세관에서 심사후 면세통관 가능
 - 전시회 선물용 기념품은 세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물교부 대상자를 신고해야 함.
 - 전시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수입화물 통관절차에 따라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해야 함.
 - 전시물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대상 전시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포기전시물품의 접수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함.
- 재수출 통관절차
 -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 종료후 10일내에 세관에 전시물품 처리내역서(處理清單)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직원이 현품과 일치여부를 검사
 - 국외로 재반출되는 전시회물품은 3개월이내에 재반출해야 하며, 재반출기한내에 재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반출기한 연장신청 가능

8. 과다적재(일사) 및 부족적재(단사) 수입화물

- 과다적재 수입화물(進口溢卸貨物)
 - 과다적재 수입화물은 그 수화인이 내국인인 경우 동 수화인이 선박회사등의 동의를 얻어 수입신고하여 납세통관 가능
 - 과다적재된 수입화물로서 부족적재된 화물을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선박에 적재수입된 동일품종이거나, 동일 선박이 아니라도 동일 선박회사, 동일 발화인, 동일 품종인 경우 보상수입 가능.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차

량, 가전제품, 사무실용품 등 국가제한 기계전기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허가증 제출을 면제

- 부족적재 수입화물(短卸貨物)
 - 부족적재 수입화물이란 운송서류상 기재된 수량보다 적게 수입된 화물을 의미
 - 부족적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세관에 화물정리보고서(理貨報告), 상품검사증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하며, 세관은 관세등을 감액 징수하거나 이미 징수한 관세 등을 환급 가능

제5장 가공무역 수출입통관제도

1. 진료가공

1) 進料加工의 특징

- 進料加工은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품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
- 수입한 원재료, 부품과 가공후 수출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중국내 업체소유
- 완제품 수출시 중국내 진료가공업체가 국외의 수입자 자유선택가능(다만, 수출대응계약인 경우 제외)
- 수입원재료, 부품은 재수출된 가공완제품 또는 반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2) 進料加工에 대한 특혜

- 관세특혜등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등은 수입시 보세처리한 후 가공후 재수출한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등을 면제하고,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제출을 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 食物油, 양모, 成品油, 原油는 제외)
 - 진료가공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다만, 쿼터대상물품인 경

우는 수출허가증 필요)

- 진료가공 과정에서 소모되는 합리수량 범위내의 소모재료(촉매제, 催化劑, 세정제 등 화학물품)는 수입시 보세 처리하고 실제 소모된 수량에 따라 면세처리
- 제품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품, 폐기물품 등은 사용가치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
- 생산작업 방법등의 개선으로 절약된 재료, 부품 또는 증산된 완제품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그 가액이 재료 및 부품 수입총액의 2%이내이고 인민폐 5,000원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처리
- 진료가공상품의 재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자등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소량의 보조재료 및 타당한 소형소모성 생산공구는 면세처리

○ 進料加工 종류별 관세특혜

- 진료가공 보세공장과 진료가공 보세창고 업체가 수입한 보세공장 가공용 원재료, 부품등과 동 보세창고내 보관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등은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의 징수를 전액 면제(保稅처리)
- 재료 및 부품의 수입과 가공완제품의 수출을 대응시키는 계약(對口合同)을 체결한 진료가공의 경우 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가공후 실제 수출한 부분에 소요된 원재료 및 부품은 면세처리
- 기타 진료가공계약하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및 일부 과세(定額免稅)
- 다음 15개 수입물품은 95% 면세, 5% 과세처리
- 15개 수입물품외의 수입물품은 85% 면세, 15%를 과세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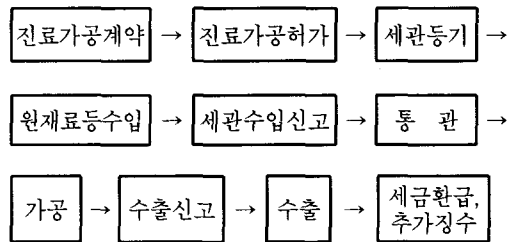
※ 95%면세대상 15개 품종 :

각종 무두질 또는 무두질하지 않은 모피, 각종 생피, 각종 피혁, 각종 합성피혁 및 인조피혁, 상아, 진주, 각종 옥, 다이아몬드 및 그 반제품(玳瑁) 산호 및 호박, 毛條 및 毛紗, 64인치이상 광폭 棉布, 64인치이상 광폭 滌棉布, 순모, 순면, 화학섬유 및

기타섬유 혼방 面料와 里料, 인조모피, 각종 機電產品의 부품, 완성된 포장용품

- 자산 및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진료가공 업체가 수입하는 진료가공용 원재료, 부품 및 세관관리가 불편한 수입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시 전액세금을 징수하고 수출시 퇴세
- 진료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설비는 일반 수입화물에 준해 과세 처리

3) 進料加工절차 등



○ 진료가공허가 및 세관 등기

- 외국업체와 진료가공계약 체결 후 경제무역 주관부문에 진료가공허가를 신청하여 進料加工批准書를 취득해야 함.
- 진료가공 허가를 취득한 업체는 관할 세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은 심사후 전액 면세 또는 비율면세 실시 등을 확정하고 進料加工登記手冊과 은행보증금대장개실연락서(開設銀行保證金臺帳聯系單)을 발급
- 진료가공업체는 동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보증금대장을 개설

○ 원재료등 수입 및 가공제품 수출 통관

- 진료가공용 원재료등의 수입시 등기 수책과 수입신고서 등 수입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전액 면세 또는 일부 면세 통관 허용
- 진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등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제품을 가공하여 재수출 해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관할지세관에 기간연장 신청 가능
- 가공수출계약 집행완료후 1개월내에

登記手冊, 수입통과서류 및 수입재료 및 부품사용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말소(核銷)수속을 하고, 은행보증금대장상에 말소(核銷)처리

- 외국 수입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 원재료, 보조재료와 포장재료는 가공후 남은 잔량이 있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가공수출계약물품의 생산에 계속 사용 가능하며, 내수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 납부후 수입통관해야 함.
- 진료가공제품의 국내판매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및 가공 완제품은 국내에서 판매 불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수판매가 필요한 경우 경제무역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수판매시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 허가 대상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수입원재료등 국내원재료등의 교환
 - 진료가공용 면세수입 원재료 및 부품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내의 기타 원재료 및 부품과 교환 사용 불가
 - 가공수출제품의 긴급 수요등 특수사정으로 국내의 동품종, 동규격, 동수량의 원재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이익의 과다나 가격차등의 문제를 불문하고 관할지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

2. 내료가공

1) 來料加工의 특징

- 외국업체가 원재료, 부품 또는 필요시 기계설비를 제공하여 가공한 제품을 외국업체에 수출하고 가공비를 받는 방식의 가공 무역
- 수입한 원재료, 부품은 외국업체가 무상으로 제공
- 수입한 원재료 및 부품과 수출하는 제품의 소유권은 외국업체에 귀속
- 수출한 제품은 외국업체가 책임 판매

2) 來料加工에 대한 특혜제도

- 내료가공용 수입원재료, 부품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제출면제(다만, 식용설탕, 면화, 食物油, 양모, 成品油, 원유 제외)
- 내료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원재료, 부품 등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
- 가공생산 수출제품에 직접 사용되고 가공생산과정중 소모되는 연료유는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및 관세등 면제
- 직접 생산에 사용될 임대생산설비의 수입시 수입허가증 면제
- 기술개선등으로 절약된 원재료 또는 제품을 내수판매하는 경우 가액이 수입원재료의 2%이하 인민폐 3,000원미만일 때에는 수입허가증 면제 및 면세처리,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은 면제하되 세금은 징수
- 내료가공제품의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

3) 來料加工 절차 등

- 내료가공 계약등기, 내료가공용 원재료 등의 수입 및 내료가공 제품의 수출 절차 등은 진료가공과 동일

4) 기타 來料加工 관련규정

- 헌옷, 음란내용의 패서적, 유해물질 함유 물품, 방사성 폐기물 등 수입금지 품목과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및 그 부품은 내료가공용 원재료로 사용 불가, 유독화학품, 군민통용화학품, 사향, 우황 등은 내료가공 불가
- 식용설탕, 산화알루미늄 및 면화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내료가공과 면제품, 잠사등 17개품목을 생산하는 내료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협작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국내에 판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 불가
- 가공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은 반드시 수출해야 하며, 국내판매하고자 할 경우 경제무역관련부서의 동의를 받

은 후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 허가대상물품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원재료와 교환하여 사용 불가
- 내료가공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정밀재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계약원재료 및 부품의 이전 수속을 해야 함.
- 내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하거나 저장할 수 없으며 계약의 취소, 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 세관에 보고
- 내료가공계약 이행완료후 1개월내에 來料加工 登記手冊상 등록말소(核銷) 수속을 해야 하며, 등록말소수속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등으로 처벌

제6장 外商투자기업의 수출입통관제도

1. 외상투자기업의 종류

- 중외합작경영기업
 - 외합자경영기업(합자기업)은 중국의 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공장을 의미
 - 합자기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둘 이상의 다른 국가 또는 지구의 합자자로 구성. 기업은 법인지위를 가지며, 합자자는 기업정관,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경영하고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
 - 합자자는 투자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익과 손실을 분배 및 부담(주식권리식 유한책임회사)
 - 합자기업은 일정한 경영기한이 있으며, 공업항목은 일반적으로 10~30년이며, 투자규모가 크고 이윤율이 낮고 자금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기업에 대하여는 30년을 초과하여 허가 가능
 - 합자기업의 기본형식은 공동출자형

식이며, 각 투자자는 주식구입의 방법으로 일정비율의 자본에 참가

- 외국투자자의 합자기업 등록자본중 투자비율이 일반적으로 25%보다 낮지 않도록 규정
- 중외합작 경영기업
 - 합작기업은 일종의 계약식 합영기업이며, 계약에 의해 각 측의 권리와 책임, 의무와 이익분배를 결정
 - 합작기업은 법인 또는 비법인 모두 가능
 - 합작기업은 각 측의 합작조건이 주식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이윤의 배분과 위험, 손해의 부담은 출자비율이 아닌 계약상 조건에 따라 결정
 - 합작기업은 출자방식을 가격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으며, 노동인력도 출자방식으로 투자 가능
 - 합작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으로 전자산은 중국측에 무상으로 귀속
- 외상독자기업
 - 외상독자기업(외자기업)은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며, 손익은 외국투자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

2.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정책

1) 수입설비기자재 관세면제제도('98. 1. 1 이후 시행)

- 외국인 투자장려업종에 투자한 외국 투자기업의 수입설비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 혜택 부여
- 관세면제가능 업종
 - 농업 신기술, 농업종합개발, 에너지·교통·중요 원자재공업 건설에 속하는 것
 - 첨단기술 또는 선진기술로서 생산기술을 개선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사용을 절감하며, 기업의 기술효율을 제고하고, 국내시장수요에 부응하고 국내생산능력이 부족한 신설비, 신자재에 속하는 것
 - 국제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는 것
 - 자원절약과 재상자원의 종합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신기술, 신설비에 속하는 것

- 중서부 내륙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것
- 관세면제대상 품목
 -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가공무역업의 경우 외국의 수입자가 제공한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 면세불허대상 품목
 - 외국투자기업 : TV, 비디오, 비디오 카메라,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음향설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 화교환기, 퍼스날컴퓨터, 전화기, 무선호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관세율표 1~83장, 91~97장 세번물품
- 면세수속절차
 - 외국투자기업 : 사업타당성 연구심사기구(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확인서 및 외국인 투자기업 허가서류와 영업허가서를 소지하여 소재지 세관에서 면세수속
 - 가공무역업체 : 허가받은 가공무역계약서를 소지하여 소재지 세관에서 면세수속

2) 1996. 3. 31이전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설비기자재 관세면제

- 중국은 '96. 4. 1부터 종전에 외상투자기업(3자기업)의 수입설비기자재 및 원재료에 대해 부여하던 관세면제제도를 폐지
- 이미 투자허가를 받아 투자진행중인 외상투자기업체의 수입설비기자재 및 원재료에 대하여는 투자허가금액범위내의 설비기자재 수입완료시까지 관세면제특혜를 계속 부여

3) 수출세 특혜등

- 외상투자기업이 수출하는 자가생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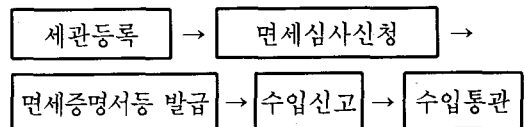
품에 대하여는 수출제품 제한 및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수출세를 면제

4) 기타방면의 특혜

- 외상투자기업은 그 경영범위내에서 수출입무역경영자격이 있으며, 그 경영범위내에서 해당기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전설비, 원재료 부품등을 수입가능하고 해당업체 생산제품 수출 가능
- 외상독자기업과 화교등이 투자한 四胞企業이 그 투자액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 기기설비와 물자는 수입허가증 제출 면제. 다만,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이 수입하는 자가사용 기기설비 및 물자는 수입허가대상인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 의무
- 가공무역업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주 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나,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별도 비준 불요
- 수출입업무종사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시관리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 설립 허가 가능

3.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의 통관

1) 통관절차



- 외상투자기업의 세관등록(企業備案)
 - 외상투자기업은 대외경제무역관리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 등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관할지 세관에 기업등록(企業備案)
 - 세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며, 등록(備案)수속완료후 세관은 등록증명서(企業登記備案證明書)와 외상투자기업면세수입물품 登記手冊을 발급
 -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각 측은 계약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액을 납

부하고 출자액검사 후 1개월 내에 공증업무를 수행 회계사 사무소가 작성한 출자금 검사보고서(驗資 報告)를 제출

- 征免稅證明
 - 설비기자재등의 수입전에 외상투자기업 수입화물 征免稅證明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화물명세서와 INVOICE를 제출하여 관할세관에서 면세심사 신청
 - 세관은 심사허가후 征免稅證明을 발급하며, 화물 수입시 기업은 征免稅證明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속
 - 征免稅證明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특수상황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심사허가를 거쳐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은 관할세관 또는 물품수입지세관에서 통관수속가능

2)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의 감시관리

-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은 일정기간(세관감시관리기간)동안 전매, 양도 등을 제한
 - 선박, 비행기, 건축재료(강재, 목재, 합판 유리 등 포함)의 세관 감시관리기간은 8년
 - 機動차량과 가전제품의 세관 감시관리기간은 6년
 - 기계설비와 기타설비, 재료 등에 대한 세관 감시관리기간은 5년
- 세관감시관리기간은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의 통관일로부터 기산하며, 동기간내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 양도 또는 타용도로 전환 불가
- 면세수입설비기자재 등이 세관감시관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세관은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해 감시관리를 해제하고, 감시관리해제증명을 발급
- 세관감시관리기간내의 면세수입설비기자재등을 국내에 전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비준부서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평가가격에 의하여 관세등을 추가징수

4. 외상투자기업의 저당·압류 및 파산·청산

- 저당 및 압류
 - 세관감시관리화물을 국내외의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설정할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담보 또는 저당된 설비기자재등의 실제 처리시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수속을 거쳐야 함.
- 파산 및 청산
 - 外商투자기업이 투자계약을 종결, 해제 또는 파산한 경우 심사허가기관이 재산청산진행을 허가한 15일 이내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기업파산 효력발생일 15일 이내에 세관에 등록 말소 신청
 - 재산청산 진행전에 면세특혜를 받은 감시관리화물에 대해서는 납세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은 감시관리기간내의 감면수입화물에 대하여 아래규정에 의거 처리
 - 중국측 합자경영 당사자가 계속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국내기관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가격에 의해 관세등을 징수
 - 국내의 동등한 특혜 가능 외상투자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심사허가기관의 허가 및 세관전매수속을 거친 후 계속 감면특혜가 가능하며, 동 수입화물의 세관감시관리기간은 최초 수입일로부터 계산
 - 세관의 심사허가를 거쳐, 외국측 합자경영 당사자는 당초 감면수입된 화물을 국외로 재반출 가능